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 업 지 원 과

#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김낙관 의원 외 1 인

#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 (김낙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의자: 김낙관·정지원 의원(2인)  
찬성자: 김근한·김민성·김원섭·김춘남  
박교상·신용하·양진오 의원(7인)

### 1. 제안이유

구미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 나.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등(안 제5조~제10조)
- 다. 지도·감독, 사무의 위탁(안 제11조~제12조)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9조
  -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3) 「통계법」 제22조

나. 부서검토: 기업지원과 의견제출(붙임)

##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디자인산업의 진흥 기반조성 및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제품디자인

나. 환경디자인

다. 시각·포장·정보디자인

라. 서비스·경험디자인

마.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바. 디지털미디어·콘텐츠 디자인

사. 산업공예 디자인

아. 융합디자인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디자인행위와 결과물

2. "디자인산업"이란 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연구·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자문·활용 등을 하는 산업 및 이와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3. "디자인 전문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기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패션·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자인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진흥 기본방향과 목표

2. 디자인산업진흥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3. 디자인산업진흥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4. 디자인산업진흥 관련 법·제도 등의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디자인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분석 단위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을 진흥 및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자인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디자인 지원사업
2. 디자인산업 관련 창업·제작, 기술개발·제품화 등 지원
3. 디자인산업 교육, 홍보 및 마케팅,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
4. 디자인산업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 사업
5. 디자인전문회사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등에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디자인산업의 진흥 및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디자인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4. 디자인산업 전람회, 전시회 개최, 포럼 등 행사 개최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디자인산업 개발사업 지원 및 정보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 디자인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디자인산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디자인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해

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 ③ 생략

※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특수분류 > CCUS산업 특수분류’

분류구분	내용	비고
대분류(73)	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732)	전문 디자인업	
소분류(7320)	인테리어 디자인업(73201)	
	제품 디자인업(73202)	
	시각 디자인업(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업(73209)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기업지원과

<b>조 례 명</b>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안
<p><input type="checkbox"/> <b>검토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제9조, 제12조</li> <li>▪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li> <li>▪ 통계법 제22조</li> </ul> </li> </ul> <p><input type="checkbox"/> <b>주요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4조)</li> <li>○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등(안 제5조 ~ 제10조)</li> <li>○ 지도·감독, 사무의 위탁(안 제11조 ~ 제12조)</li> </ul> <p><input type="checkbox"/> <b>검토 결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디자인산업 지원을 원활히 하여 구미산단 기업의 마케팅·브랜드 등 디자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li> <li>○ 다만, 경북도 산업디자인 육성조례 중 종합계획 수립 규정이 명시돼 있고 지역 디자인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수정을 요청함.</li> </ul> <p>※ 수정(안)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 (중략) ~ 기본계획을 5년마다 <u>수립·시행할 수 있다.</u></p> <p><input type="checkbox"/> <b>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효과 : 지역 내 디자인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 신설 등을 규정하여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li> <li>○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기존 예산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경우)</li> <li>○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li> </ul>	